

국고보조금 운용의 효율화를 위한 정책과제

이재원(부경대)

I. 국고보조금제도의 현황

1. 국고보조금 규모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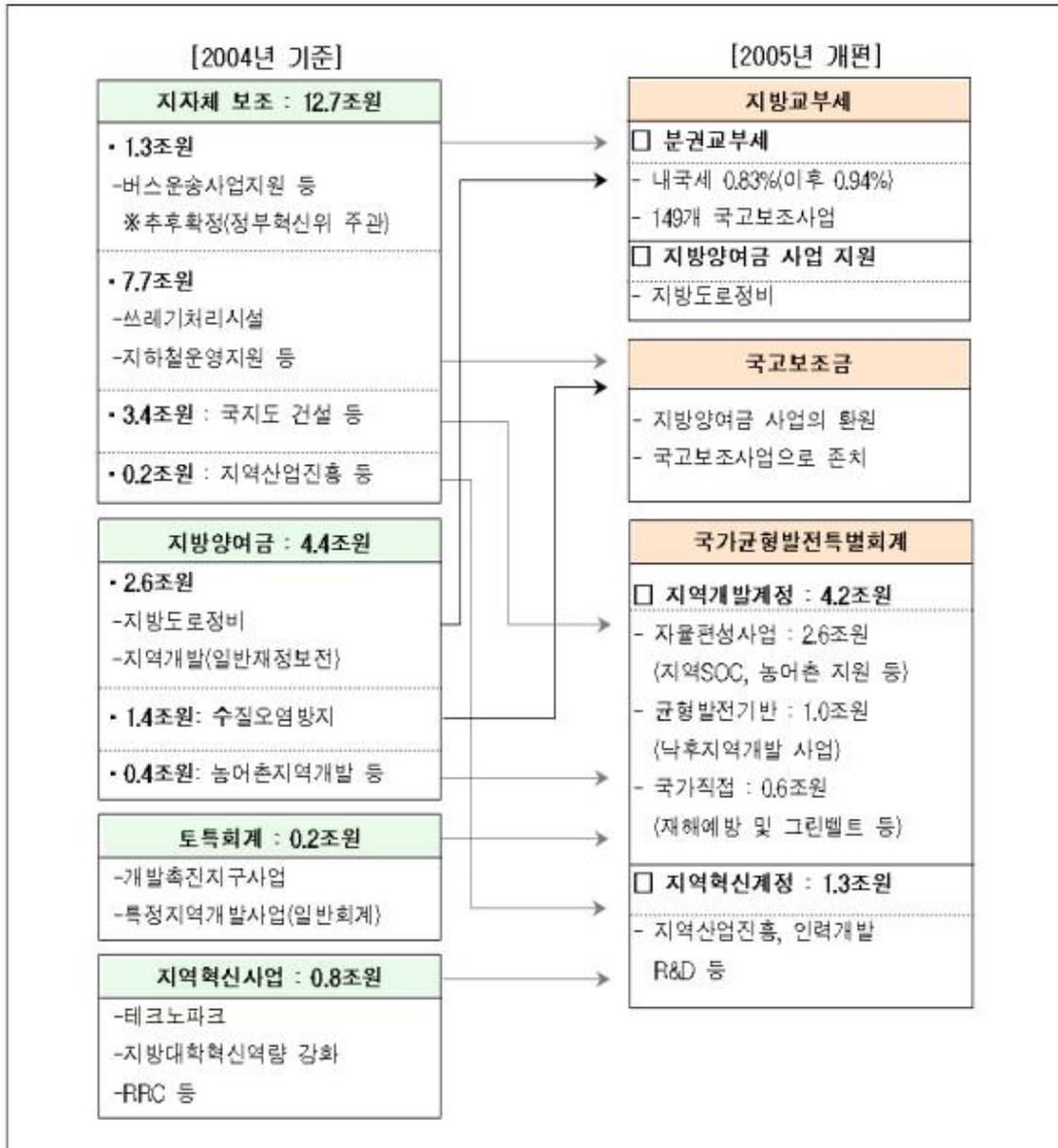
- 국고보조금은 2014년 기준으로 919개 사업, 39.6조원
 - 국고보조금 및 사업 수 현황은 중앙정부의 재정여건과 중앙 각 부처의 사업 특성에 따라 매년 변동이 상당함. 2004년도의 분권교부세와 균특회계를 통한 대규모 정비 이후 다시 지속 증가.
 - 국고보조사업수 : 613개(2001년)→359개(2004년)→919개(2014년)
- 2000년대 중반이후 중앙·지방간 재정관계에서 국고보조금의 비중과 기능이 지속 확대되었음.
 - 중앙정부는 직접 사업 수행 보다는 지자체를 일선 집행기관으로 위탁하는 보조방식을 확대하였음.
 - 지역개발사업에서 공모형 보조사업 증가, 지특회계 생활기반계정의 세출관리는 국고보조방식으로 전환. 복지보조사업의 규모 급증.
- 지방자치단체의 자주재원 비중과 기능이 계속 취약해 지면서 지자체 투자사업에서 국고보조금을 유치하려는 경쟁이 심화되었음.
 - 이에 따라 중앙정부 각 부처에 대해서 지자체 국고보조사업의 재원규모 및 사업수를 확대해야 한다는 외부적인 영향력이 확대되었음.
 - 지자체 자체사업 투자심사 및 예산배정과정에서 국비 지원이 확정된 사업을 우선 고려하면서 지자체 각 부서별 국비보조 유치 경쟁 심화.

2. 국고보조금의 부처별·사업별 분포

- 일부 부처, 특정 사업 중심의 국고보조금 지속 증가
 - 국고보조금의 55.6%인 22.0조원(134개)은 보건복지부 소관. 보조사업 수는 국토교통부가 176개로 가장 많음.

- 보건복지부는 기초연금, 의료급여, 생계급여, 주거급여, 영유아보육료지원, 가정양육수당지원의 6개 사업이 부처 보조금 예산의 79.2% 차지함. 사업별 재원 규모 편차가 상당함.
- 국고보조사업의 수와 금액은 특정 부처에 집중
 - 사업비 규모 기준으로 1조원 이상의 국고보조금을 운용하는 부처는 9개이며 전체 비중은 94.7%(사업수 732개)임. 국비 기준 1조원 이상 사업은 5개이며 모두 보건복지부 소관 사업임.
 - 부처별로 사업 및 운영 특성에서 차이가 있어 독립적인 정부간 재정관계를 형성할 필요가 있지만 부처별로 전문화된 담당 조직 및 인력이 명확하지 않음.
- 부처별로 국고보조율에서 차이가 상당
 - 상위 9개부처 가운데 보건복지부의 국고보조율은 69.7%로서 상대적으로 높은 반면 문화체육관광부는 90개사업의 평균 보조율이 43.8%로 낮음.
 - 국고보조사업을 시작할 때 설정한 기준보조율을 대부분 그대로 지속 적용하고 있으며 최근 20여년동안 지방자치와 사회정책에서 사업특성 변화에 대한 고려 미흡.
- 국고보조사업별 국비 재원 규모의 편차가 상당
 - 상위 28개 사업의 국비 규모는 26.1조원으로 전체 65.8%를 차지함. 부서별로 사업별 평균국고보조금 규모에서도 편차가 상당함.
 - 문화체육관광부의 90개 보조사업 평균금액은 150억원이며 해양수산부는 94개 사업에서 평균금액이 94억원임.
 - 부처의 보조금 금액은 상대적으로 적지만 여성가족부와 고용노동부의 경우 사업단위당 국비규모는 각각 105억원(36개사업), 87억원(24개사업)에 불과함.

〈그림1〉 2005년도 국고보조금 정비 내역



자료 : 윤영진·이재원(2006:50)

〈표 1〉 중앙정부 부처별 국고보조사업 현황(2014)

(단위 : 개, 억원, %)

	사업수	사업비	국비	국고보조율	사업당평균 국고보조액	국고보조금비중	
						부처별	누적
보건복지부	134	315,485	219,858	69.7	1,641	55.6	55.6
농림축산식품부	87	61,460	40,413	65.8	465	10.2	65.8
환경부	85	62,735	37,824	60.3	445	9.6	75.3
국토교통부	176	54,766	33,947	62.0	193	8.6	83.9
문화체육관광부	90	30,876	13,538	43.8	150	3.4	87.3
산림청	35	16,581	9,291	56.0	265	2.3	89.7
안전행정부	42	12,221	6,890	56.4	164	1.7	91.4
소방방재청	18	13,399	6,813	50.8	378	1.7	93.1
해양수산부	65	10,409	6,119	58.8	94	1.5	94.7
산업통상자원부	24	7,128	4,006	56.2	167	1.0	95.7
여성가족부	36	6,048	3,787	62.6	105	1.0	96.6
문화재청	17	4,865	3,179	65.4	187	0.8	97.4
고용노동부	24	2,673	2,092	78.3	87	0.5	98.0
기획재정부	5	2,323	2,032	87.5	406	0.5	98.5
농촌진흥청	24	3,386	1,821	53.8	76	0.5	98.9
중소기업청	5	2,418	1,473	60.9	295	0.4	99.3
교육부	3	1,612	1,066	66.1	355	0.3	99.6
식품의약품안전처	9	632	326	51.6	36	0.1	99.7
법무부	12	429	311	72.4	26	0.1	99.7
미래창조과학부	8	501	285	56.8	36	0.1	99.8
경찰청	2	271	271	100.0	136	0.1	99.9
대법원	1	205	205	100.0	205	0.1	99.9
국가보훈처	9	66	66	100.0	7	0.0	100.0
외교부	2	61	61	100.0	30	0.0	100.0
통일부	3	55	55	100.0	18	0.0	100.0
국방부	2	100	50	50.1	25	0.0	100.0
공정거래위원회	1	2	2	100.0	2	0.0	100.0
계	919	610,705	395,782	64.8	431	100.0	100.0

주 : 2014년 당초예산. 조사시점과 분류 기준에 따라 동일 연도의 통계에서도 총액 차이발생.

자료 : 행정자치부 제공

〈표 2〉 국비 규모 상위 28개 사업의 국고보조율 분포

(단위 : 10억원, %)

소관부처	세부사업명	사업비	국비	국고보조율	사업별 국비비중
보건복지부	기초노령연금지급	6,900	5,177	75.0	13.1
보건복지부	의료급여경상보조	5,851	4,436	75.8	11.2
보건복지부	영유아보육료지원	5,057	3,329	65.8	8.4
보건복지부	생계급여	3,164	2,524	79.8	6.4
보건복지부	가정양육수당지원사업	1,887	1,215	64.4	3.1
농림축산식품부	일반농산어촌개발	1,219	853	70.0	2.2
농림축산식품부	쌀소득보전고정직불	774	774	100.0	2.0
국토교통부	지방하천정비	1,282	765	59.7	1.9
보건복지부	주거급여	913	728	79.8	1.8
환경부	하수관거정비	1,169	719	61.5	1.8
보건복지부	보육돌봄서비스	973	467	48.0	1.2
보건복지부	장애인연금	693	466	67.2	1.2
보건복지부	장애인활동지원	626	413	66.0	1.0
보건복지부	자활사업	519	412	79.4	1.0
환경부	상수도시설확충및관리	502	362	72.0	0.9
소방방재청	재해위험지역정비	705	352	50.0	0.9
환경부	하수관거정비BTL사업임대료지급	547	347	63.3	0.9
환경부	하수처리장확충	545	314	57.7	0.8
농림축산식품부	배수개선	290	290	100.0	0.7
보건복지부	노인일자리운영	555	261	47.0	0.7
환경부	생태하천복원사업	402	261	64.8	0.7
환경부	공단폐수처리시설	318	255	80.3	0.6
문화재청	문화재보수정비	346	234	67.6	0.6
환경부	농어촌마을하수도정비	341	232	68.0	0.6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자원개발	457	229	50.0	0.6
농림축산식품부	친환경농자재지원	266	227	85.2	0.6
소방방재청	소하천정비	419	209	50.0	0.5
국토교통부	성장촉진지역개발	235	209	88.9	0.5
소계		36,955	26,060	70.5	65.8
기타보조금(2천억미만)		85,186	13,518	15.9	34.2
합계		61,071	39,578	64.8	100.00

주 : 2014년 당초예산. 조사시점과 분류 기준에 따라 동일 연도의 통계에서도 총액 차이발생.

자료 : 행정자치부 제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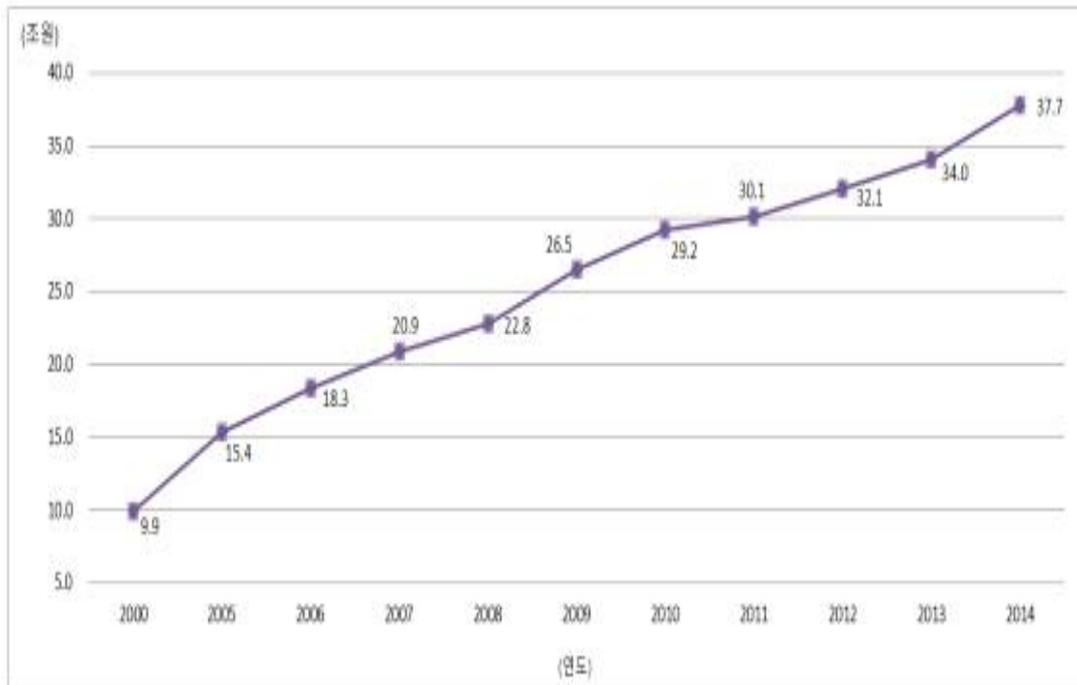
Ⅱ. 국고보조금제도 운용의 쟁점

1. 국고보조금의 규모 급증에 따른 재정압박

- 중앙정부의 재정 기능이 확대되는 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를 일선행정기관으로 설정하는 국고보조방식이 상대적으로 증대되었음. 2005년도 국고보조금은 15.4조원이었는데 2014년도는 37.7조원으로 10년동안 2.4배 증가하였음.
- 국고보조금의 증가율이 국가 재정 규모 증가율보다 월등히 상회하면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모두 재정압박 문제를 겪고 있음.
 - 최근 5년동안 중앙정부 예산 연평균증감률은 4.0%, 지방재정의 일반재원 증감률은 2.7%, 하지만 국고보조금은 7.3%로 높았음.
 - 지방재정에서는 최근 5년동안 일반재원(지방세, 세외수입, 지방교부세)의 증가율보다 2.7배정도 더 증가하여 국고보조에 따른 지방비 매칭에 한계가 발생하였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세출구조를 상당히 왜곡시켰음.

〈그림 2〉 국고보조금 규모 증가 추이

(단위 : 조원)



자료 : 행정자치부 재정고

〈표 3〉 최근 5년간 복지보조금 규모와 증감추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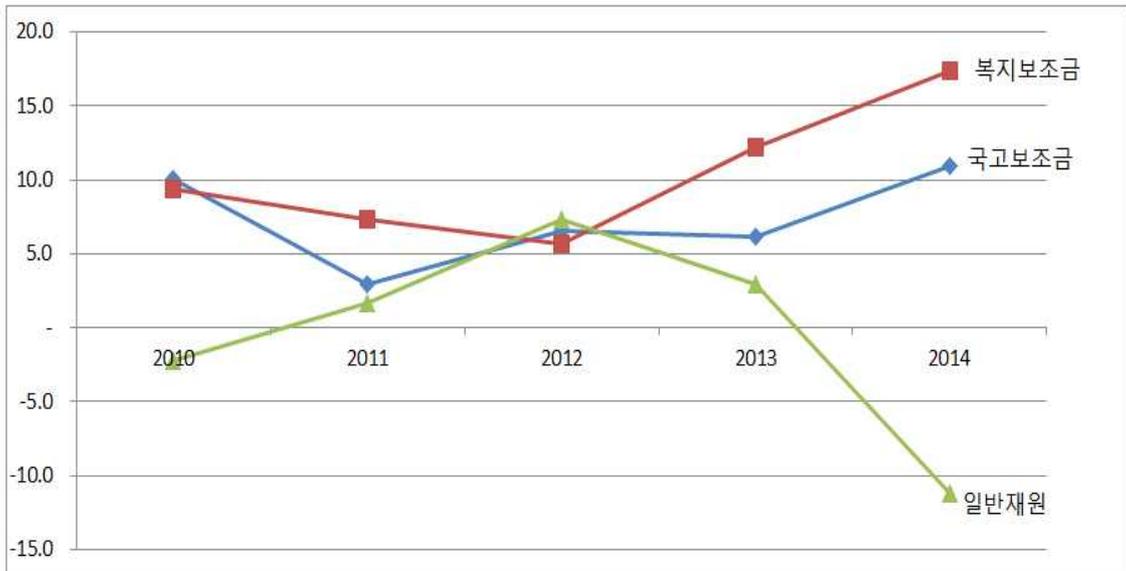
(단위 : 조원, %)

		국고보조금	복지보조금	일반재원	지방재정	중앙재정
규모	2010	30.0	13.9	105.0	139.9	248.7
	2011	30.5	15.0	106.7	141.0	258.9
	2012	32.1	15.9	115.1	151.1	274.8
	2013	34.3	18.1	118.6	156.9	286.4
	2014	37.7	21.9	106.7	163.6	309.7
전년 대비 증감률	2010	10.1	9.4	-2.2	1.7	-1.4
	2011	3.0	7.3	1.6	0.8	4.0
	2012	6.6	5.7	7.3	6.7	5.8
	2013	6.2	12.2	3.0	3.7	4.1
	2014	10.9	17.4	-11.2	4.1	7.5
	평균	7.3	10.4	-0.3	3.4	4.0

주 : 1) 지방자치단체 예산은 일반+특별회계 당초예산
 2) 중앙정부 예산은 일반+특별회계 결산(기금제외), 2014년도는 당초예산
 자료 : 행정자치부 재정고, 기획재정부 디지털회계시스템

〈그림 3〉 최근 5년간 전년대비 복지보조금 증감율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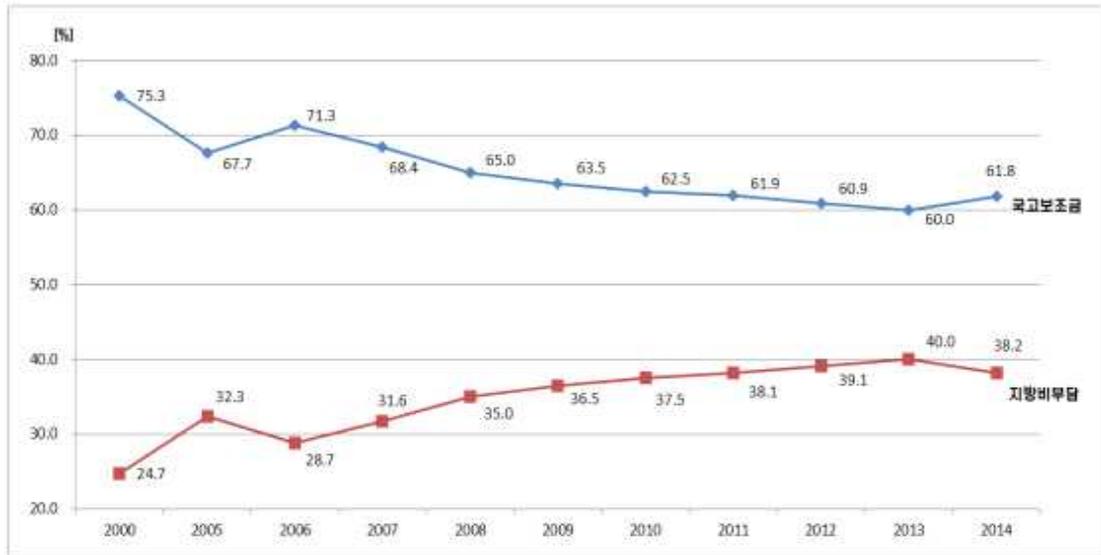
(단위 : %)



주 및 자료 : <표 7-3>과 동일

〈그림 4〉 국고보조사업에서 국고보조금과 지방비의 비중 추이

(단위 : %)



자료 : 행정자치부 재정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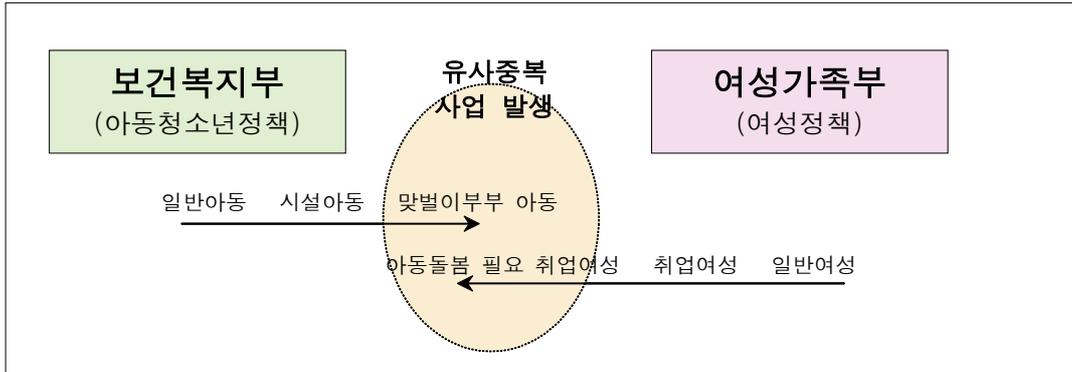
- 국고보조금의 절대적 규모가 증대되면서 지방비 부담 규모 역시 증대되었는데, 사업재원 구성에서는 지방비 비중이 더 높아지고 있음. 이에 따라 중앙정부의 국고보조금 증대는 지방비의 추가적인 부담 압박을 가중시킴.
 - 2014년도 국고보조금 비중이 증가한 것은 영유아보육료지원 사업의 기준보조율이 15% 인상된 영향이 큼.
 - 지특회계 생활기반계정사업을 비롯한 지역개발 사업에서 실질적인 국고보조율은 감소 추세임.

2. 국고보조사업의 유사중복성에 따른 재정 비효율성

- 부처간 정책(사업)경쟁으로 유사중복사업 발생
 - 중앙부처 업무가 기능별·대상별로 별도 분리·운영되어(예, 중소기업지원의 경우 중소기업청 vs 미래창조과학부) 국정과제 수행 과정에서 경쟁적으로 신규 사업 신설하여 ‘부처별 고유영역 확대하면서 경계부분’에서 유사중복 발생
 - 중앙정부의 각 부처별로 상위목표로 설정된 국정과제를 실천하는 하위 단위사업을 개발·운영하는 과정에서 유사 중복 사업이 구조적으로 발생함. 예) 보건복지부 일자리사업 vs 고용노동부 취업지원사업, 사회적경제 진흥 사업(마을기업, 사회적기업, 농어촌 공동체회사) 등.
 - 유사중복사업은 재정의 관점에서는 비효율성 쟁점이 제기될 수 있지만 정책의 관점에서는 정책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가외성 확보와 혁신의 효과가 창출될 수 있는 전략영

역임.

〈그림 5〉 아동돌봄 관련 국고보조사업의 유사중복 발생 구조(예시)



○ 중앙·지방간 유사중복 사업 발생

- 지방자치법에서 규정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영역이나 지자체의 관련 부서의 담당사무와 중앙정부 소관 부서의 사무가 포괄적인 범위에서 동일하게 규정.
- 사회 경제적으로 국가의 정책 개입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영역에 대해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중복적으로 재정사업을 설계·운영(예, 중소기업 수출지원, 출산장려지원 등).

3. 국고보조사업 기준보조율의 체계성 및 중앙정부 지원 미흡

○ 기준보조율 체계성 취약

- 보조사업의 기준보조율을 사업 초기에 설정된 이후 지속되고 있음. 이에 따라 사회 경제적 환경 변화와 정부간 재정관계 변화 요소들을 기준보조율체계에 적절히 반영하지 못하였음.
- 1986년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 이후 기존 사업들의 기준보조율체계 고착 지속. 이에 따라 정부간 재정관계(지방자치 부활), 사회안전망 강화(기초생활보장), 경제구조변화(서비스경제 전환) 등의 사회 경제적 변화에 따른 재검토 부재

〈표 4〉 법정 국고보조사업 기준보조율의 부문별 분포

(단위 : %, 개)

기준 보조율	합계	보건 복지	농림축산 어업	환경	국토 교통	문화체육 관광	기타
100	12		8	1			3
90	1				1		
80	19	10	6	1		1	1
75	1						1
70	30	8	10	8	1	2	1
65	1	1					
60	3		1		1		1
50	71	24	19	10	6	6	6
40	6		3	1	1	1	
35	1	1					
30	18	4	4	5	1	3	1
20	3	1	1	1			
10	2			2			
정액	12	2	3	1	5	1	
합계	180	51	55	30	16	14	14

주 : '합계'는 차등보조율 적용사업을 개별로 분리·포함한 사업 수

자료 :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

- 2014년 예산기준으로 919개 국고보조사업 가운데 기준보조율이 법정화되어 있는 경우는 114개(차등비율 고려시 180개)로 법정화비율은 12.4%에 불과함. 이에 따라 국고보조사업에서 기준보조율의 법적 기반과 안정성 미흡.
 - 유사한 재정 혹은 사업 특성의 보조사업에서 기준보조율이 달리 설정되는 등 보조율 수준에서 일관성이 미흡함. 특히 기준보조율이 사업별·부처별로 다양하게 설정되어 있어 보조율체계의 논리성과 일관성이 취약함.
 - 기준보조율이 법정화된 경우에도 정액~100%까지 14가지 기준보조율
- 전국 표준적인 국고보조사업에서 낮은 기준보조율 지속
- 전국 단위로 국가최저수준(National Minimum)을 보장하는 국가시책으로 시행되는 유사 사업들간 보조율이 달라 형평성 결여. 영유아보육은 2014년부터 보조율이 15%p 인상(서울 20%, 지방 50% → 서울 35%, 지방 65%)되었음에도 기초생활보장보다 보조율이 크게 낮음.
 - 주요 복지사업의 평균보조율의 경우 국가예방접종 46%, 영유아보육 64%, 장애인연금 67%, 기초연금 76%, 기초생활보장 79% 등으로 다양함. 국가 표준적인 사회안전망을 제공하는 기초생활보장사업과 비교할 때 다른 유사 주요 사업들의 보조율은 상대적으

로 낮은 상태 지속.

-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협의회 등은 복지수요 증가로 인한 지방재정 부담 증가로 인해 주요 복지사업의 보조율 상향을 지속 요구

4. 국고보조사업 차등보조율의 적실성과 일관성 취약

- 차등보조율 적용 대상 사업의 선정 기준 불명확
 - 부처별·사업별로 임의적으로 차등대상 사업을 선정할 이후 사회 경제적 환경 변화를 고려한 적절한 개편 부족.
 - 복지보조사업의 경우에는 시군구 중심으로 차등보조율이 설계되어 있으며 광역자치단체에 대한 고려는 충분하지 않음(예, 의료급여의 지방비 부담은 광역자치단체가 담당하는데 차등보조 대상 사업에서 제외)
- 지자체별·산식별 이중차등화
 - 생계급여, 자활급여, 보육료지원 등과 같은 주요 복지사업에서는 [서울-지방]으로 기준보조율을 달리 설정하고, 이후 지자체의 재정여건과 재정수요를 기준으로 인상/인하보조율을 적용하는 “중복 차등화” 규정 적용. 이에 따라 서울의 인하보조율 대상으로 선정되는 자치구는 이중의 불리한 보조율을 적용받게 됨.
 - 의료급여는 [재정여건+재정수요] 기준의 차등보조율을 적용받지 않으며 기초연금에서는 [서울-지방]의 차등화가 적용되지 않음. 차등보조율을 설계·적용하는 기준에 대한 일관성과 논리적 근거 취약.
- 복지보조사업 차등보조율에서 차등화 결과의 정당성 미흡
 - 법정 기준보조율체계에서 다양한 형태의 차등보조율 적용 규정이 있음. 다만, 현실에서 쟁점이 되는 것은 주요 복지보조금에서 차등보조율임. 2000년대 중반부터 자치구의 복지비 부담이 급증하면서 이에 대한 대응으로 기초생보, 기초연금, 보육료지원 사업에서 10% 기준의 차등보조율제도를 도입.

〈표 5〉 차등화 유형별 차등보조율 적용 대상 사업

	사업수	보건복지	농림축산수산	환경	기타
지자체 유형별 (서울-지방) (수도권-비수도권) (광역시-시군-도청소재지등)	21	75. 선천성장애이상감사및소아환자 관리 76. 헌혈환자 보호시설 운영 78. 국가여병접종 실시 79. 방과 후 돌봄서비스 85. 기초생보 의료급여 86. 노숙인시설및노숙인요양시설 운영 87. 장애인 의료비 장애인 자녀 학비 지원 88.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90.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 94. 긴급복지지원서울 96. 아동통합서비스 지원·운영 97. 장애인활동 지원 98. 장애인연금 99. 지역자율형사회서비스 투자사업	35.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설치	24.공단폐수종말처리시설 27.쓰레기 소각시설 31.하수처리장 확충 34.하수처리수재이용 사업 112.하수관로 정비	46.도시철도 건설
지자체유형 재정여건 재정수요	8	70. 청산시설 확충 80. 기초생보장 생계급여 81. 기초생보 주가급여 82. 기초생보 자활급여 83. 기초생보 해산급여·장제급여 84. 기초생보 교육급여 89. 영유아보육료 및 가정양육수당 지원 95.보육돌봄, 육아종합지원서비스제공, 어린이집교원 양성 어린이집 지원 및 공공형어린이집			
시설 및 사업별	15		8. 방조제 개수·보수 11.축산분뇨처리시설 12.농어촌자원복합산업화 지원 13.연근해어선 감척 19.농가경영안정 재해 대책비 40.해양 및 수자원 관리 47.산림병해충 방제 49.조립사업	25.농공단지폐수종말처리시설 113.비점오염 저감사업	41.대중교통 지원 42.지역거점 조성 지원 64.문화시설 확충 및 운영 102.사회적 기업 육성 106.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
합계	44	22	9	7	6

주 : 기초연금은 기초연금법 시행령 별표2에 따라 40%-90%까지 차등보조율 적용(노인인구비중, 재정자주도 기준; 서울-지방 구분 없음.)

자료 :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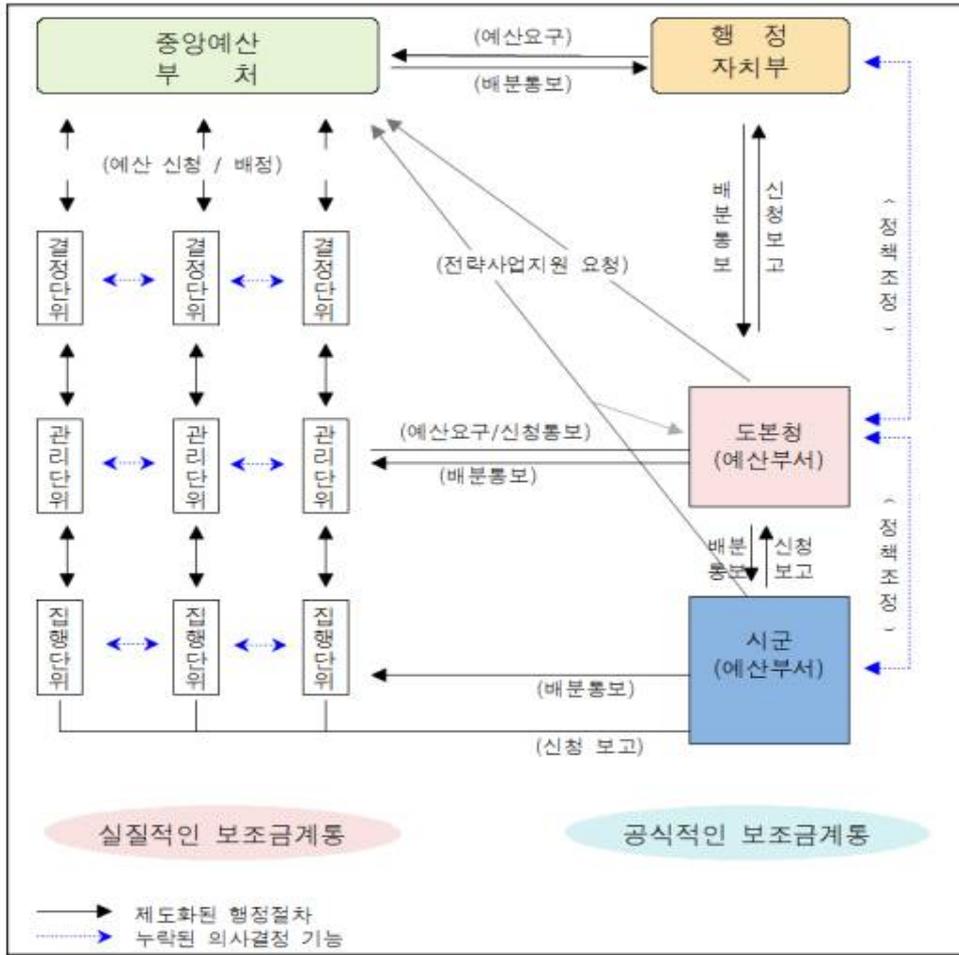
- 산식을 통한 차등화 결과에 따라 대부분의 자치구에 대해 10% 인상보조율을 적용받음. 이에 따라 차등화의 현실적인 결과는 ‘자치구 주요 복지사업에 대한 보조율 인상’임.
- 시군에 대한 의미있는 차등보조율 혜택 적용이 없음. 이에 따라 자치구를 위한 복지보조사업 차등보조율제도를 시군자치단체까지 확대 적용하여 제도운영에서 비효율성 쟁점 발생.

- 시군의 경우 보통교부세 고려할 때 이중 혜택 쟁점이 발생할 수 있음. 재정여건이 불리한 지자체는 보통교부세 재원배분에서 상대적으로 유리하게 반영됨. 따라서 국고보조율에서 차등은 이중의 지원 혜택이 발생할 수 있음.
- 복지보조사업 차등화 산식지표의 타당성 취약
 - [재정여건+재정수요]를 고려한 차등보조방안에서는 관련 지표가 적절하지 않은 쟁점이 제기됨.
 - 재정자주도는 사후·상대적 지표. 재원배분 공식에서는 재정력지수와 지역내총생산 등과 같은 절대적 지표가 필요함. 사회보장비 역시 상대적 지표이며 회계 기준에서 타당성이 높지 않음.
 - 기초연금에서와 같이 재정자주도가 80%가 넘는 지자체에 대해 인상보조율을 적용하는 것은 산식의 형식 논리에서는 적절하지 않을 수 있음.

5. 중앙-광역-기초의 중층관리체계, 관리비효율성

- 국고보조사업 관리체계에 개입하는 재정 주체 과다
 - 법적으로 지출해야 하는 개인단위별 의무보조사업들을 ‘예산’ 방식으로 운영하면서 예산과 결산과정의 행정관리 부담 상당.
 - 특히 대인서비스가 많은 사회복지사업에서는 보조금 지불정산 업무부담 상당함.
- 지방자치의 분권화된 행정체계에서는 계층단위별로 준독립적인 재정사업 의사결정이 이루어짐. 또한 세입재원과 지출 특성이 지자체별로 다양하기 때문에 표준화된 형태가 보조사업이 운영될 수 있는 여지는 계속 협소해짐.
 - 이에 따라 대부분의 사업들이 중층적으로 연결되는 현재의 계층단계 구조에서는 한 부분에서 재정애로로 인하여 전체 재정사업이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높음.
 - 예, 중앙정부와 기초자치단체의 재정여건이 양호하여도 광역자치단체에서 재정애로 현상이 발생하면 전체 보조사업 운영·관리에 부정적 영향.
- 국고보조사업의 재정관리계통과 사업관리계통의 분리에 따른 복잡
 - 지자체 내부의 예산부서-사업부서간 협의기능 약화된 상태에서 중앙부처와 지자체 사업부처간 수직관계로 운영되어 재정‘자치’ 위기 심화

〈그림 6〉 3단계 중층구조의 현행 보조금제도 운영방식



Ⅲ. 국고보조금 운용의 효율화를 위한 정책과제

1. 국고보조금 규모 및 사업수 축소

- 중앙정부 각 부처의 직접 사업수행 방식으로 전환
 - 중앙정부가 별도의 지방행정조직이 있는 부처에서는 국고보조방식 보다는 직접 사업 수행을 통해 국고보조금의 절대적 규모 축소.
 - 소관부처에서 지자체와 개별적으로 협상하여 지방비 분담 방식으로 사업 자원 구성. 부처 직접 사업 수행을 통해 성과책임 소재 명확, 집행률 제고, 낭비성 재정지출 통제 등의 비용-효과성이 기대됨.
 - 예를 들어, 생활체육, 문예진흥, 사회적기업, 노인일자리, 자활, 건강증진사업 등 중앙정부 산하기관에서 실질적으로 사업의 내용을 관리하는 사업은 중앙정부가 지방특별행정

기관을 통해 직접 정책 담당 가능(예, 고용센터, 병무행정, 국민연금·건보 등)

- 중앙정부 각 부처별 국고보조사업의 한도비중 설정
 - 국고보조사업의 규모 및 비중이 많은 중앙부처(보건복지부, 문화체육관광부, 환경부, 농림축산식품부 등)에서는 자체 예산에서 국고보조금의 비중 한도를 설정하여 상대적 규모(비중) 확대 억제
 - 부처 직접 사업 수행방식과 지자체에 사업을 위탁한 국고보조방식의 장단점을 고려하여 자체 예산에서 국고보조 비중을 적정 수준에서 조정
- 국고보조사업 일몰제와 지방이양
 - 국고보조사업 일몰제를 도입하여 국고보조사업의 존치 타당성을 재평가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수행하는 것이 적절한 사업에 대해서는 국고보조사업을 폐지하고 지방이양을 추진함.
 - 50%미만 기준보조율을 3년이상 적용하여 운영하는 국고보조사업은 4년차부터는 원칙적으로 지방이양 대상에 포함.
 - 지특회계 생활기반계정사업에서 2005년도 균특회계 신설 때부터 운영된 사업은 우선적으로 지방이양 검토.
- 국고보조금 재정준칙 도입을 통한 지방재정 보호
 -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일반재원의 규모 증감율과 국고보조금 증감률을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중앙정부의 예산을 편성하도록 의무화하는 (가칭) ‘국고보조금 재정준칙’ 규정을 설계·운용함.
 - 이는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국세 및 지방세 수입 추세를 고려하여 중앙정부 각 부처의 국고보조사업 신설 및 지자체의 사업 신청 규모를 조정하는 것임(중앙과 지방의 PAYGO 원칙 동시 적용)
 - 지자체 재정자주도가 감소하며 지방세 기반이 국세와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취약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국고보조금 재정준칙에서는 매년 중앙정부의 국고보조금 총액 증가 규모를 지방자치단체의 일반재원 증가율 이내로 한정할 수 있게 통제할 필요가 있음.
 - 국고보조사업에 대한 지방비 부담규모 증가율을 최근 3년동안 일반재원 증가율과 연동하여 국고보조사업 확대에 따른 지방재정의 왜곡이 발생하지 않게 하는 조치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포괄보조제도 도입을 통한 국고보조사업 수 및 규모 축소
 - 포괄보조프로그램 설계 구상(예시)

- 지자체의 자율 재정사업 운영을 통해 혁신 성과가 기대되는 국고보조 부문에서는 프로그램 단위에서 포괄보조제도를 설계·운영하여 정부간 재정성과계약체계를 구축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음(예, 미국의 TANF).
- 동일한 국정과제에 속하고 다수 부처에 개별 사업이 산재해 있지만 지향가치와 성과가 유사한 보조사업은 포괄보조로 묶어 광역단위로 세출 재량을 확대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예, 사회경제진흥프로그램 : 경우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자활사업, 지역사회서비스사업 등).
- 부처의 성과계획서의 동일 전략목표 단위에서 운영되는 소규모 보조사업들은 하나의 보조사업으로 통합하여 부처에서 광역지자체와 성과계약체계를 운영하는 포괄보조프로그램을 설계할 수 있음(예, 문화체육관광부의 생활체육지원 사업).
- 단위 사업별로 재정지출 규모가 큰 사업 가운데 지자체별 사업운영의 다양성을 인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개별사업 단위의 포괄보조프로그램을 설계·운영할 수 있음(예, 농산어촌개발, 보육료지원, 하천정비 등)
- 포괄보조프로그램 도입시 예상되는 쟁점
 - 포괄보조는 미국에서 연방정부와 주정부간 재정관계에서 운영하는 독특한 제도로서 단일제 국가에서는 활용성이 크지 않음. 정부간 성과계약방식이 수직 계층으로 구축된 단일제 국가의 재정관계에서는 적용하기 쉽지 않음.
 - 미국의 사례에서 포괄보조는 중앙의 지원 축소와 주정부의 사업 재량 확대를 교환하는 방식으로 추진됨. 이 경우 주정부 사업관리 역량이 충분해야 하며 지자체별로 역량 차이가 크지 않아야 함.
 - 보조사업이 기초자치단체 중심으로 운영되며 광역자치단체의 관리 조정 역량이 크지 않은 사업에서 포괄보조프로그램을 도입하면 비효율성 문제가 심각하게 발생할 수 있음. 이 경우, 중앙정부의 재정지출 총량은 감소되어도 사업 자체의 성과 확보가 명확하지 않아 정부가 해결해야하는 사회 경제적 문제에 비용-효과적으로 대응하기 힘들 수 있음.
 - 포괄보조프로그램은 중앙정부의 국고보조금 지원 규모의 절대적 총량 축소가 명시적 혹은 암묵적으로 전제된 것임. 따라서 총량 축소와 재량확대에 대한 제도 취지를 지방자치단체가 내부적으로 수용할 수 있어야 포괄보조에서 기대할 수 있는 비용-효과성을 확보할 수 있음. 그렇지 않을 경우 분권교부세 사업의 경우와 같이 정부간 재정갈등이 심화될 수 있음.
- 분권교부세 사례를 고려할 때, 포괄보조를 도입하는 중앙정부의 취지와 목적이 명확히 제시되어야 하고, 예상하지 못한 부작용에 대한 설득력 혹은 신뢰성있는 대응방안들이 사전에 설계되어야 함.

2. 기능전담체계를 통한 국고보조사업의 유사 중복 완화

- 부처별 정책전담체계 구축, 효율성과 책임성 강화
 - 사무분장 개편 : 유사중복 부처간 업무분장체계를 개편하여 관련 분야의 보조사업을 추가 신설하지 못하도록 제도적으로 규제. 업무분장 개편시 조직·인력·예산·근거법령 등 관련 제도 요건을 종합적으로 통폐합 조정하면 구조적으로 유사중복 사업 방식 가능.
 - 국고보조사업 중복성 심사기구 신설 : 기존의 국고보조사업의 유사 중복성 여부를 심의하여 통합방안을 권고. 국고보조사업을 신설할 때는 심의기구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지방재정법 근거 규정마련)

- 사무전담방식으로 정부간 재정관계 개편
 - 정책분야·대상별 사무전담 개편 : 예) 노인·장애인복지는 중앙정부 전담하고 아동·청소년복지는 지방자치단체 전담하는 방식으로 정부간 재정기능 개편. 관련 분야 정책성과 및 재정관리의 책임 소재를 명확히 구분
 - 국고보조사업의 지방이양 : 지방자치단체가 선호하거나 국고보조율이 50%미만으로 지방재정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국고보조사업은 조직·인력·재원을 종합하여 지방사무로 이양.
 - 지방자치단체 사무로 적합한 경우 중앙정부에서 국고보조사업을 신설하지 못하도록 규정(중복성 심사기구에서 담당).

- 유사중복사업 방지 조치에 따라 예상되는 쟁점
 - 쟁점 1 : 정책 사각지대의 발생과 즉각 대응 애로
 - 중앙정부의 각부처 혹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고유사무 영역에 집중하여 재정사업을 수행함.
 - 이에 따라 사업영역의 외곽 부문에서 예측하지 못한 상황에서 발생하는 사회 경제적 문제에 대한 선제적 대응이 쉽지 않아 정책의 사각지대가 상존할 가능성이 높음.
 - 쟁점 2 : 부처별 재정사업 및 정책 혁신 약화
 - 정책(사업) 혁신은 고유업무 영역 보다 외곽의 경계부문에서 새로운 환경변화와 제도·기술혁신을 재정사업에 활용하면서 활성화되는 경우가 많음.
 - 중앙정부의 각 부처 그리고 중앙과 지방의 고유 사업 영역이 확정되고 새로운 사업에 대한 중복성에 대한 심의 기능이 강화되면 다양한 제도 요소를 복합적으로 고려하는 신규 혁신 사업 설계·운용과 관련된 정책동력이 약화됨.
 - 쟁점 3 : 맞춤형 사회복지 관련 국정과제와 상충 경향
 - 맞춤형 사회복지가 국정과제로 설정되어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정책대상이 아닌 정책

기능별로 정부기능 분담이 재설계되었음.

- 예, 주거급여와 교육급여 프로그램이 보건복지부 소관에서 국토교통부와 교육부로 이관. 이러한 경우, 보건복지부, 교육부, 국토교통부에서 저소득 취약계층에 대한 수급조건과 복지서비스 수준/내용 등을 달리 설계하면 국고보조사업의 유사중복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 이에 따라 현실적으로, 최근 제도 개편된 사업에서는 유사중복 사업 관리를 위해 정책대상자별로 관련 국고보조사업을 종합하여 한 개의 담당 부처에서 전담하는 방식을 적용하는 것이 쉽지 않을 수 있음.
- **쟁점 4 : 제도개편의 재정적 실익 미흡 가능**
- 대규모 재정사업이 지출되고 최근 제도 개편된 사항을 제외하고, 소규모 재정사업 중심으로 유사중복사업의 조정을 추진할 수 있음.
- 다만, 제도개편에 따른 재정적인 실제 효과는 제한적일 수 있음.

3. 기준보조율의 체계성 및 일관성 제고

○ 기준보조율의 단순화

- 재정긴축국면이 지속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개별 국고보조사업의 근거법령에서 기준보조율을 법정화하기 보다는 현재와 같이 기준보조율을 단일 법령에서 종합 관리할 필요가 있음.
- 현행 114개 국고보조사업에 대한 법정기준보조율의 적정성을 재검토하고 추가적으로 법정화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국고보조사업의 존치 여부를 일몰의 관점에서 심사하여 기준보조율을 법정화함.
- 현행 14가지 기준보조율을 축소하여 외부성(경제사업)과 사회적 필요성(사회사업)에 따라 두 가지(80%, 50%)로 간소화함.
- 전국 단위로 표준적인 관점에서 중앙정부의 사업운영 책임이 큰 경우는 80% 기준보조율을 적용하고 지자체별로 다양성하게 운영되며 지자체의 자발적 신청에 따라 지원되는 사업은 50% 기준보조율을 적용함. 50%미만의 기준보조율은 인정하지 않으며 3년 이내 시범사업 이후 기준보조율의 재조정 혹은 지방으로 사업을 이양함.

○ 기준보조율 법정화 대상사업 확대 및 포함 기준 명확화

-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일정기간 이상(예, 3년이상)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기준보조율을 법정화하여 지자체에 대한 안정적인 재정지원을 보장함.
- 총액기준 일정규모 이상(예, 1,000억원)의 국고보조사업에 대해서는 기준보조율의 적정에 대한 심의 이후 관련 보조율을 법정화함. 이와 관련하여 지방재정법에 기준보조율심

의 규정기구 및 심의 근거 조항을 신설할 필요가 있음.

- 기준보조율이 50% 미만인 경우는 법정화에서 제외하고 지자체의 신청주의를 실질적으로 엄격히 적용하여 부처에서 자율적으로 운영하도록 규정.
- 기준보조율 100%인 보조사업은 법정화 대상에서 제외하고 위탁수수료와 같은 지방재정의 세외수입 항목으로 분류할 필요가 있음. 100% 보조사업의 경우 실질적으로 소요되는 경비를 정기적으로 재산정하는 근거 규정을 지방재정법에 신설하는 방안 검토.

○ 전국 표준적으로 운영되는 주요 사업의 기준보조율 인상 조정

- 국가최저수준(National Minimum) 복지사업의 보조율을 기초생활보장 수준으로 통일 (평균 79%, 서울 50%, 지방 80%)
 - (장애인연금) 지방 10%p 인상 (70%→80%)
 - (영유아보육) 서울/지방 15%p 인상 (서울 35%→50%, 지방 65%→80%)
 - (예방접종) 서울 20%p, 지방 30%p 인상 (서울 30%→50%, 지방 50%→80%)
 - 기초연금은 재정소요 변동현황에 대한 검토 후 적정 보조율 수준 검토
- 사회복지비중이 높은 단체의 차등보조율 추가 인상 검토 (예: +10%p)

〈표 6〉 주요 복지사업별 보조율 개선안

사업명	<현행>		<개선>		비고
	평균 보조율	기준 보조율	평균 보조율	기준 보조율	
기초연금	76%	40~90%	현행과 동일		·재정자주도, 노인인구 고려
장애인연금	67%	(서울) 50% (지방) 70%	79%	(서울) 50% (지방) 80%	·<신설>차등보조율 적용 ±10%p (사회복지비 지수, 재정자주도)
기초생활보장	79%	(서울) 50% (지방) 80%	현행과 동일		·차등보조율 적용 ±10%p (사회복지비 지수, 재정자주도)
영유아보육	64%	(서울) 35% (지방) 65%	79%	(서울) 50% (지방) 80%	·차등보조율 적용 ±10%p (사회복지비 지수, 재정자주도)
국가예방접종	46%	(서울) 30% (지방) 50%	79%	(서울) 50% (지방) 80%	·<신설>차등보조율 적용 ±10%p (사회복지비 지수, 재정자주도)

4. 차등보조율제도에서 차등화 산식 개편

- 주요 복지보조사업의 차등보조율이 결과적으로 자치구 중심으로 운용됨. 자치구는 보통 교부세를 교부받지 않기 때문에 차등보조율을 적용하지 않으면 복지보조사업에서 재정 부담이 급증할 수 있음.
- 복지보조사업은 차등보조를 통해 조정되는 재원규모가 크기 때문에 합리적인 수준에서

제도 개선 운영이 필요함. 특히 현행 지표 산식의 합리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개편하여 차등보조율제도의 쟁점들을 해소할 필요가 있음.

- 차등보조율 적용 대상 지자체 선정을 위한 지표 산식 개편을 위해서는 현재의 상대적 지표에서 절대적 지표(재정력지수, GRDP, 지역소득 등)로 전환, 관련 통계자료 및 지표 개발 필요

5. 국고보조사업 운영체계의 효율성 제고

- 공모방식의 국고보조사업에서 지자체 매칭펀드사업 개선
 - 중앙부처에서 공모사업을 추진하면서 지자체들간 과도한 경쟁을 유도하여 입지 적합성 이외 지방비의 부담 정도를 크게 반영하여 지방재정의 부담이 과도하게 증가하는 경향이 있음.
 - 따라서, 중앙부처의 공모사업 추진시 사업계획 수립 또는 공모이전에 지방재정 부담규모 및 관련 내용의 타당성을 지방재정관점에서 심의할 수 있도록 제도화할 필요가 있음.
 - 예, 매년초 중앙부처의 모든 공모사업에 대해 사업계획수립 또는 공모이전에 지방재정 부담심의위원회를 거쳐 추진사업 대상을 결정하고 공모추진내용 개선 이후 중앙부처 및 지자체에 통보하는 방안 마련.
- 중층적인 관리체계의 단층화와 지방비 부담비율 한도액 설정
 - 수직적인 관리 감독 기능의 중층체계를 사업·기능 중심으로 단층화 가능하게 광역·기초자치단체간 기능·사무배분 재설계. 특정 사업을 특정 지자체가 전담하는 방식으로 기능 개편.
 - 지자체의 세입에서 의무적으로 부담해야 하는 지방비 부담비율의 한도액을 설정하여 지방재정의 책임과 자율성 가치를 제고함.
 - 중앙정부의 각 부처별로 지방재정 분담금 규모 혹은 재정비율 한도를 설정하고, 한도 내에서 지자체와 협의하여 보조사업 운영
 - 지자체는 국고보조금 비중 한도 범위내에서만 중앙정부에 대해 국고보조사업을 신청하도록 규정하여 중앙정부 예산사업에 대한 필요이상의 국고보조사업 유치 경쟁의 비효율성에 대응함.
- 국고보조사업의 지불정산체계 개편
 - 복지보조사업에서 현금급여사업의 지불정산체계 전산화. 국고보조금을 예산형식으로 선지급하여 결산(정산) 보고를 받은 현행 관리방식에서 사후적으로 분담금 형식으로 정산하는 후불제로 개편

- 지자체간 국고보조사업에서 경비정산체계 설계·운영
 - 지리적 외부성이 발생하는 국고보조사업에서는 명백한 외부성에 대해 지자체간 관련 경비의 지불정산체계를 운영하여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제고(예, 노숙자 쉼터, 부랑인 수용시설, 장애인 생활시설 등)
 - 지자체간 시설 공동이용 유도를 통해 각종 공공서비스 혹은 복지시설의 중복(과잉)투자 방지(신규 시설 설치 보다는 시설이용률 제고 유도)
- 지방재정의 세입항목 개편 : 지방부담금 항목 신설
 - 지방교부세와 국고보조금 사이에 ‘지방부담금’ 항목을 신설하여 지자체가 중앙정부의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지방비를 부담하는 국고보조사업의 재정규모를 별도로 분류.
 - 지자체 유형별로 ‘지방부담금’비중이 전체 지방세입에서 일정 비율을 초과하지 않도록 중앙정부의 국고보조사업 신설 및 확대를 금지하는 재정준칙을 설정.
- 일정 규모 이상의 국고보조사업을 관리하는 전산체계 구축
 - 일정 규모 이상 국고보조사업은 e-호조에 관리단위 등록. 사전등록되지 않은 국고보조사업은 지방예산으로 운영하지 못하게 규정.
 - 지자체에서 다수의 국고보조사업을 통합 운영하는 경우 사업별 보조재원을 분리 정리 하는 회계기준(단위) 개발

IV. 맺음말

- 연구내용의 요약
 - 중앙·지방간 이해관계가 공유되는 정책부문들이 많아지면서 최근 10여년동안 국고보조금의 규모와 사업 수가 지속적으로 확대되었음.
 - 국고보조금 중심의 정부간 재정관계가 심화되면서 재정운영의 효율성 측면에서 다섯 가지 쟁점이 발생하고 있음.
 - 첫째, 지방재정에서 일반재원 증가율을 월등히 상회하는 수준에서 국고보조금의 규모 증대가 증대하면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비 부담이 가중되고 있음.
 - 둘째, 주요 국정과제를 수행하면서 중앙정부 각 부처별로 경쟁적으로 국고보조사업을 운영하여 국고보조금의 유사중복 쟁점들이 발생하고 있음.
 - 셋째, 국고보조사업이 처음 도입되었던 당시에 설정되었던 기준보조율이 재정환경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 또한 중앙 각 부처·사업별로 임의적으로 보조율이 적용되

고 있어 기준보조율의 체계성 혹은 일관성이 취약함.

- 넷째, 사회복지보조사업에서 지자체의 재정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주요 사업에 대해 차등보조율제도가 운영되고 있지만 차등화 방식의 합리성이 취약함.
- 다섯째, 중앙-광역-기초의 수직적인 국고보조금 관리체계 운영에 따른 재정관리의 비효율성이 상당함. 사회복지보조사업의 규모와 종류가 확대되면서 개별 보조사업의 재정관리 부담이 지속적으로 증대되고 있음.
- 중앙·지방간 기능연계가 심화되고 정부간 이해관계를 공유하는 영역이 확대되면서 국고보조금제도 운영 체계의 재설계가 필요함.
- 특히 80년대 중반에 도입된 현행 보조금관리기본법의 기본 체계와 내용의 상당 정도 개편이 필요함.
- 정책과제는 다섯 가지로 유형화할 수 있음. 즉, 보조금 규모 축소, 유사중복사업 방지, 기준보조율체계 재정립, 차등보조율 산식의 합리적 개편 그리고 보조금 재정관리체계의 정립 등임.

○ 국고보조금 운용의 효율화를 위한 정책제언

- 국고보조금 규모를 축소
 - 현행 보조금사업을 대폭 정비하기 위해 보조사업의 지방이양, 일몰제 적용에 따른 자동폐지, 그리고 중앙정부가 해당 사업을 직접 수행하는 방식으로 전환하는 방안 등의 검토가 필요함.
 - 재정긴축국면이 지속되면 중앙재정과 지방재정의 증감률과 비례하여 보조금의 증감률을 자동 조정하는 국고보조금 준칙을 운영할 필요가 있음.
 - 지방자치단체의 재정관리 혁신이 기대되거나 상위 프로그램의 전략목표가 동일한 사업에 대해서는 포괄보조 개편하는 방안도 도입할 필요가 있음.

〈표 7〉 국고보조금 운용 효율화를 위한 정책과제

과제	세부과제	소관부처	추진방식
국고보조금 규모축소	현행 보조금 사업 대폭정비 (직접수행, 지방이양, 일몰폐지)	기획재정부 행정자치부	(가칭)국고보조금 혁신단
	국고보조금 재정준칙 규정 신설	기획재정부 행정자치부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 지방재정법
	포괄보조프로그램 도입	기획재정부 중앙 각 부처	대상 사업 분류 포괄보조 규정/산식개발
유사중복 사업 방지	부처별 정책전담체계 구축	행정자치부 기획재정부	부처별 사무분장체계 개편
	국고보조사업 중복성 심사	행정자치부	-중복성 심사기구 상설 운영 -행정자치부 국고보조금제도 전담 부서 신설
	중앙·지방간 재정기능 개편	행정자치부 중앙 각 부처	지방자치법 정책부문별 해당 법률 개편
기준보조율 체계 정립	기준보조율 단순화	기획재정부	50%와 80% 이원화
	법정 기준보조율 대상 확대 (기준보조율 적정성 심의)	기획재정부 행정자치부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 지방재정법
	국가최저수준복지사업의 기준보조율 인상 조정	기획재정부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
차등보조율 개편	차등화 대상 사업 선정 기준 정립	기획재정부 행정자치부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
	보조율 차등화 산식 지표 개선		자치구에 대한 차등보조 특례 차등보조율 적용 산식 개편
국고보조 사업 운영 체계 개편	중층적 관리체계의 단층화	기획재정부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
	지자체 지방비 부담비중 한도설정	행정자치부	지방재정법
	공모방식 국고보조사업의 지방비 부담 타당성 사전 심사	행정자치부	지방재정법
	국고보조사업 지불정산체계 개편	행정자치부	지방재정법
	지자체간 공공서비스 경비 정산체계	행정자치부	지방재정법
	지방세입 항목에 '지방부담금' 신설	행정자치부	지방재정법
	국고보조사업의 전산관리체계 정비	행정자치부	지방재정법

- 국고보조금에서 유사중복 사업 방지
 - 중앙정부 부처별 재정기능 중복 혹은 재정사업 경쟁체계를 개편하여 국고보조사업을 전담할 수 있도록 부처별 업무경계를 명확히 설정해야 함.
 - 다만, 정책의 사각지대가 부처별 업무 경계 영역에서 적지 않게 발생할 수 있어 예상하지 못하는 새로운 사회 경제 문제에 대한 능동적 대응이 힘들 가능성에 대해 주의가 필요함.
- 기준보조율체계 정비
 - 일관성과 체계성이 취약한 기준보조율제도는 전체적인 재정비가 필요함.
 - 사업의 재정적 특성에 따라 기준보조율을 단순화하고 중앙정부의 역할이 중요한 사회

안전망과 보편적 사회서비스 분야의 기준보조율은 높은 수준에서 일관성을 유지하도록 개편해야 함.

- 차등보조율 제도 개편
 - 복지사업에서 지방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차등보조율제도에서는 차등화 지표 산식을 현재의 결산 혹은 사후적 상대지표가 아닌 예산 혹은 사전적 절대 지표로 대체하여 산식의 타당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 국고보조금제도의 관리체계 정비
 - 중앙-광역-기초로 연결되는 중층적 관리체계를 단층화시켜 재정관리의 효율성과 사업성과에 대한 책임성을 제고해야 함.
 - 각종 국고보조사업에서 지방비 부담 수준의 적정성에 대한 사전 심사제도를 운영하고 재원배분의 효율성을 위해 지자체간 보조사업에서 지불정산체계를 설계·운영할 필요가 있음.
 - 지방비를 부담해야 하는 사업 유형을 의무적 부담과 재량적 부담으로 구분하여 전자를 중심으로 지방세입 항목에 ‘지방부담금’을 신설·관리하여 국고보조사업의 특성을 명확하게 확인하고 지방재정의 실질적 부담가능성과 재정 경직성 등을 체계적으로 분석할 필요가 있음.

참고문헌

- 손희준(2013). 사회복지보조금의 중앙·지방 간 분담체계에 관한 연구. 「한국지방자치학회보」, 25(3), 7~34.
- 윤영진·이재원(2006). 「포괄보조금 개념, 외국사례, 균특회계 도입방안 연구」. 기획예산처.
- 이재원(2011). 사회복지서비스투자를 위한 지방재정의 역할강화 방안 : 중앙·지방정부간 복지재정관계를 중심으로. 「한국지방재정논집」, 16(2), 87~114.
- 이재원(2011). 사회복지서비스포괄보조로서 분권교부세 진단. 「사회서비스연구」, 2(2), 31~60.
- 이재원(2013). 사회복지 보조금의 적정보조율 설정방안. 「지방재정」, 4호, 44~62.
- 임성일(2012). 국고보조금제도의 과제와 개선방향. 지방재정, 4호, 6~21.
- 최병호 외(2012). 「국고보조사업의 국가·지방간 재원분담체계 개선과제」. 행정안전부.